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74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:김민기·주철현·김병욱

박성준 · 송기헌 · 안민석

김병주 · 강병원 · 변재일

이탄희 • 이규민 • 조승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
국방부장관은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 특성화고등 학교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, 유급지원병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 (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20조의2(유급지원병제의	운영)	제20조의2(유급지원병제의 운영)
①・② (생 략)		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
		따라 선발되는 유급지원병을
		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
		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
		을 지원할 수 있다.
<u>③</u> ~ <u>⑥</u> (생 략)		<u>④</u> ~ <u>⑦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6
		항까지와 같음)